

지방분권화 시대의 교구자치제도 정립을 위한 시론

- 교구의 새로운 이해와 설계를 위한 구상들 -

김경일 위원 : 총무법제상담위원회 전문위원

1. 논의의 배경
2. 교구제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위한 중심 단서들
3. 새로운 교구설계를 위한 구상들
4. 새로운 교구제도 논의와 함께 고려할 사항들

1. 논의의 배경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참여정부는 국민 참여의 자율사회와 분권의 지방화시대라는 혁신 기저아래 새 판짜기를 강력히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참여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시대가 요청하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는 이제 교육자치로, 경찰자치로, 계속 확대 심화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민밀착형 자치사회는 머지않아 국민의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교화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의 세상 바라다보기는 오랜 인식의 정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십여 년 간의 교화정체가 이의 실제적 반증이다.

교구 분권 및 자치제도의 검토는 수위단회 총무분과전문위원회에 배당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이 과제를 논의하면서 소태산 대종사의 “조선불교혁신론”에 주목하였다. 이제 다시 우리는 불법의 시대화·대중화·생활화를 위해 불상(佛像)을 무너뜨리고, 재가출가의 장벽을 헤어내며 분파적 신앙과 수행의 통합을 무모하게(?) 혁신했던 초기교단 소태산 대종사의 고민으로 돌아가야 한다. 변화의 거부는 쇠망의 길이다. 이 논의는 조선불교 혁신을 통하여 새 회상 새 판짜기에 나섰던 대종사의 중생구원 열망에 기초하고 그가 전망했던 미래의 개벽, 미륵, 용화회상, 새 문명 사회, 전대미문의 새로운 회상, 광대무량한 낙원,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등의 개념이 취하고 있는 기저의 정신에 유념하고자 하였다.

다만, 이 논의가 우리 교구 교화제도의 이념적 규명에 있지 않고 현실적 혁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만큼 새로 논의되는 교구제도를 어떻게 하면 현실의 혼란을 극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또는 교화의 기대성과를 실사구시적

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를 동시에 함께 염려했다는 점을 미리 밝혀 양혜를 구하고자 한다.

2. 교구제도를 보는 새로운 눈을 위한 중심 단서들

(1) 논의되는 새로운 교구제도는 중앙총부의 기능 분할과 다운사이징을 생각하고 있다(총부의 다운사이징과 새로운 역할).

(2) 새로운 교구제도는 기존의 총부 권한 이양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적극적 교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교단의 교회위주 재편성의 차원에서 논의되었다(교단의 교회위주 재편성과 지역단위 교회 인프라 구축).

(3) 새로운 교구제도의 변화는 지역문화의 다양함을 반영하는 유연성과 함께 중앙총부의 통합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다(교구단위의 특성 반영과 통합관리시스템).

(4) 새로 논의되는 교구제도는 지역사회와 대중을 실질적으로 교화할 수 있는 권한 확보와 책임을 고민하였다(교구, 교당의 실질적 교화권 확보).

(5) 인문 본위가 아닌 신앙과 수행, 교화시스템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3. 새로운 교구설계를 위한 구상들

(1) 교구는 법신불(사은)의 지역사회를 향한 신앙과 수행 중심도량/교구는 단순한 관리행정업무 중심공간만이 아니다.

① 우주 만유의 본원이시고 제불제성의 심인이시며 일체중생의 본성인 법신불을 모신 도량으로서 이에 걸맞는 위엄을 갖추어야 하고, 신앙의 영험과 수행의 경건함이 배어나도록 설계되고 가꾸어져야 한다

- * 만인에게 평등하고 열린 법신불 일원상과 대각전
- * 참배와 기도도량
- * 영모전의 운영
- * 경전강독 프로그램
- * 선방
- * 다양한 봉사, 선행 교도단체 활동의 중심지

(2) 지역사회에서 전법교화의 중심도량

* 교구는 지역사회에 오직 전법교화의 사명을 다하는 것으로서 존재의의를 가진다.

* 교구장의 지위는 지역사회의 전법교화의 궁극적 책임자이며, 관할권내 모든 교당과 기관 단체에 대한 통할권을 가져야 한다(지역 통할권).

* 교구장은 전법교화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앙총부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화권을 이양 받거나 새로운 교화권을 계발,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교화권 확립).

- * 교화권 확립을 위하여 아래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인사권(고과, 추천, 배치, 협의배치에 관한 사항)
 - 감사(내부) 또는 감사의뢰권(총부)
 - 포상 또는 포상추천권
 - 징계(내부) 또는 징계의뢰권(총부)
 - 사면청원권 등
 - 출가와 재가교도에 관한 재교육(훈련)권
 - 교구내 다양한 활동가 양성교육권
 - 재가교도 법호수여권
 - 재가교도 법위 사정권(정사미만) 등
 - 재가교도 사업성적 사정권
 - 재가교도 대호법 추천권
 - 선교소 설치권 및 교당 승격 추천권
 - 관할지역내 기관 단체의 지휘권
 - 교금배정권 등
 - 교구 자치내규 제(개)정 및 폐지권 등)

(3) 현재 교구 인프라 부실을 감안할 경우 수반교당 겸임 형태 취해야(모 교구의 사례/서울교구의 경우 현 서울회관을 교구가 관할하는 교당 도량으로 전환하고 교구 수반교당으로 육성방안).

(4) 교구장은 현행과 같이 종법사가 임명하되 법통의 지방분권적 지위를 가지면서 한편 중앙총부에 대한 독립적이고도 자율적인 위상을 가지고 지역 현실에 맞는 교화통치(행정)권 행사 가능해야.

(5) 교구장 임기의 보장 필요하다(최소 1기 6년이상, 적정 임기 12년).
 (6) 교구장의 강력한 교화권 행사와 함께 교구교의회, 교무평의회의 견제장치 확보되어야 (특히 교구교의회 위원의 대의성 확보와 실질적인 권한 확립 논의 필요).

(8) 교구사무처(국)의 전문성 확보 우선적 필요

- * 교구장 교화 리더쉽 보좌
- * 교당 육성 및 관리
- * 재가교도의 교육(훈련)시스템
- * 법령제·개정 및 시행
- * 회의 전문성
- * 각종 법인관리사무
- * 기타(언론매체, NGO 육성, 정보화지원, 지역사회 교화정보수집 등)

4. 새로운 교구제도 논의와 함께 고려할 사항들

- (1) 공부위주교화종/ 교화위주사업종

(2) 새로운 교구제도는 총부(주법)에 대한 종적 전통의 계승과 함께 어떻게 독립적이고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3) 교구의 의사결정구조의 문제 역시 교구장에 대한 순명(수직적 의사결정)과 함께 재가출가 공의제도(수평적 의사결정)를 어떻게 조화롭게 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4) 교구제도 확립이란 운용에 관한 총부 지배를 최소화하고 지원시스템의 획기적인 확대를 의미할 수 있어야 한다.(교구의 자치와 다양성에 대한 간접의 최소화).

(5) 교단의 제도 혁신은 어느 정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제도 혁신과정에서의 아노미는 변화의 대가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6) 제도 정착의 연착륙을 위해 교구 내부의 핵심 역량을 축적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7) 혼란을 줄이는 방법으로 교구 내부역량이 갖추어진 곳부터 시범 교구를 지정 운용결과를 평가할 수도 있다.

(8) 교구자치와 분권의 확대가 중앙총부의 권위와 통제력 감소를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이는 다중의 주인을 이끌어냄으로써 교화활성화와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9) 총부의 거룩한 권위와 통제의 힘은 세속적 권력에서만이 아니라, 종교적 신성함의 실천에 의지할 때 그 위상이 확보된다는 점을 함께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

(10) 이제 시대의 키워드가 중앙, 통제, 법, 권위, 위엄, 순명, 일사불란등에서 지방, 자율, 분권, 문화, 창의, 다양성 등으로 이미 바뀌었음을 인정하자. 변화하자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변화하고봄으로 변화하자. 변화하기 위해 닥치는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려는 헌신성이 없는 한 변화의 열망은 허망한 것이다.

5. 교구의 구역 재편성안

위 논의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교구제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규모의 적정한 재편성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재편성을 시도해 보았다.

(1) 실질적인 교구자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구 규모를 현실화한다(국내 13개 교구를 8개 교구로 조성, 아래표 참조)

교구명	현재교구(구역)	교당	기관	출가교역자	출석수	인구수	비고
서울	서울	65	10	145	4,700	990만	현재와同
부산	부산+경남	96	10	158	4,000	770만	
대구	대구경북	35	5	61	1,300	530만	현재와同
중부	경인+강원	53	3	85	2,300	1,300만	
충청	대전충남+충북	47	5	77	1,500	480만	
광주	광주전남+영광+제주	78	11	134	3,500	390만	
전북	전북	89	17	162	5,200	150만	현재와同
특별교구	익산군산지역	39	5	77	3,700	50만	총부직할

(2) 논의과정에서 더 강력한 교구자치를 위하여 대교구제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지나친 혼란 가능성과 기타 현실 적합성을 고려하였다.

6. 결 론

본 과제의 전문위원 연구와 논의 결과 잠정적으로 합의한 결론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 (1) 시대변화를 감안할 때 교구분권 및 자치제도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이해하며 조속한 수용이 불가피하다.
- (2) 교구분권 및 자치제 도입으로 중앙총부의 위상변화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성지, 주법의 상주도량, 포괄적 교화, 포괄적 조정 및 통치, 교구교당 통합의 고도화, 양적 규모의 다운사이징)
- (3) 교구 분권 및 자치제도의 도입은 교당 현장 중심의 교화력 증진과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4) 교구 분권 및 자치제도의 도입은 교단 행정 전반에 대한 수술과 정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5) 교구 분권 및 자치제도는 새로운 전법교화공동체의 시도이며, 공동체 구성원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제1의 과제이다.
- (6) 교구장의 리더십 확보와 교구사무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당한 배려가 필수적이다.